

=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=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4. 19 ----- 사하구청장
나. 회 부 일 자 : 2007. 4. 23
다. 상 정 일 자 : 제14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('07.5.7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최삼림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우리구 이미지(CI) 통합개발계획에 따른 CI가,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구 심벌마크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구기 · 문장 · 휘장 등의 모양변경
 - 구기 : 별표 제1호
 - 문장 : 별표 제2호
 - 휘장 : 별표 제3호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개정안은 1993년에 제정된 우리구 심벌마크를 시대적감각과 지역적 특색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
- 그동안 각계각층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차례에 걸친 심의절차를 거쳐 채택된 심벌마크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붙임 : 수정안 대비표

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[별표 제2호] 문장	[별표 제2호] 문장 3. 붉은색은 울속도 새벽녘 풍광을, 녹색은 송학산과 '푸른 사하'를 상징하며 위를 향해 점차 밝아지는 색상의 단계적 변화로 아름다운 일출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사하구의 밝은 미래를 보여줌	[별표 제2호] 문장 3. ----- 사하구 ----- 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※ 여타부분은 개정안과 같음